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with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양채열 위원장, 전남대 교수 / 박래수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권오인 국장, 오세형 부장, 정호철·박지훈 간사 / 02-3673-2143)
- 제목 : [기자간담회 예고보도] 금융사등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등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금감원 국민검사 및 분쟁조정 청구·신청인단 모집간담회 등
- 시행 : 2022. 12. 29(목), (보도자료 6매, #별첨 1.~4.)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3일(화) 오전 기자간담회 10:00~10:25, 모집간담회 10:30~12:00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개 요 >

□ 사회자: 경실련 정호철 간사

- 일 시: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오전 <기자간담회 10:00~10:25> 후 <청구·신청인 모집간담회 10:30~12:00>
- 장 소: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오시는 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대 상 자: - 청구·신청인단 참여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피해자
*아래 <모집공고> 또는 #별첨의 청구신청인 자격부터 반드시 확인
- 취재기자
- 진행순서: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2. 자율적 분쟁조정 진행경과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3. 규탄발언 / 박정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청구신청인 외 공동대표)
4. 전문가 소견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5. 취재기자 질의응답 / 참석자 전체
- 장내 정리 및 휴식 -
6. 모집안내 및 청구신청 방법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7. 청구·신청 관련 질의응답 / 경실련 등
- 주 최: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실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 문 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 766-5623

* 모집설명회는 개별적인 법률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면작성 작성안내 등 청구신청 위임사무의 방법·내용·절차는 <https://moaform.com/q/smHdAb>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별첨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고피해자분들과 취재기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취지 및 배경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¹⁾로 인해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사고피해자들의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사고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국민검사청구²⁾ 및 분쟁조정신청³⁾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 이상을 모집하여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경실련과 피해자 모임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동안 금융당국과 사고 금융회사등을 상대로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개선과 자율적 분쟁조정을 타진해 왔다. 지난 7월경 <금융사들의 영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고발대회 (<http://ccej.or.kr/79773>)>를 열고, 전 금융업계의 허술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타인에 의해 제출된 영터리 위·변조 신분증 사본을 금융기관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신분증 진위확인’⁴⁾ 절차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대출사고나 예금인출 등의 모바일뱅킹 오류사고를 낸 시중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하였다. 8월경 관련법률 개정 건의(<http://ccej.or.kr/80708>)뿐만 아니라, 9월경 오픈뱅킹을 비롯한 전자금융실명거래에 필요한 ‘신원의 진위여부 등 본인확인업무’⁵⁾를 비롯한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기준과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방법’⁶⁾과 비대면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http://ccej.or.kr/80892>).
-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고금융기관들의 본인확인 방법의 위반과 확인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사실상 그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https://www.fsc.go.kr/no010101/78643>)하면서도, 반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전략한 모바일뱅킹이나 오픈뱅킹을 이용한 사고금융회사 등의 ‘피해 방지 책임’⁷⁾에 따른 배상책임이나 적법한 시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묵과하고 있다 (<https://weekly.khan.kr/C1x2>; <https://weekly.khan.kr/1L2c>). 그간 비대면 신규거래를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를

동원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의 위반이나 그 비용을 절감하고자 오픈뱅킹을 이용한 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 절차의 하자가 있는 줄 잘 알면서도,⁸⁾ 사고금융기관들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한 채무를 지게 된 사고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커녕 사기·강박으로만 뒤집어쓰워 소송으로만 계속 내몰기만 했다. 현행법이 정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⁹⁾ 안에서 이용자의 책임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등의 무과실책임¹⁰⁾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고금융회사등은 이상거래탐지나 오류정정¹¹⁾은커녕 예금반환이나 채권소멸¹²⁾을 거부한 채 오히려 사고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징구하며 압류¹³⁾ 등을 빌미로 만기전 채무를 독촉하고, 피해구제¹⁴⁾나 지급정지¹⁵⁾ 등을 조건으로 한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¹⁶⁾만을 일삼으며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 현재 신분증 사본 하나만 자칫 잘못 유출되어도 국민들 누구나 저런 사고금융기관들로부터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현실 속에서 금융사고의 피해와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 **이제는 우리사회가 저런 엉터리 핀테크 실명확인 금융사고와 사고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경실련과 사고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 이상을 공개 모집한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와 청구·신청인단의 집단 권리구제를 돕기 위하여 사고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청구·신청을 대리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사기를 비롯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사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각종 대출사고를 당한 청구·신청인단의 ▲채부무존재확인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증권)의 사고피해를 입은 청구·신청인단의 ▲예금반환, ▲추심이체출금취소, ▲비채변제 반환 등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관련 사고에 대해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금융감독원의 미흡한 민원(분쟁조정)처리 결과에 대해 재조정을 희망하는 피해 당사자라면 2023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https://moaform.com/q/smHdAb>) 및 이메일(finance2@ccej.or.kr)을 통해 청구·신청을 할 수 있다. 경실련은 많은 사고피해자들의 참여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희망한다.

< 청구·신청인단 모집공고 >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위법·무효확인 등 권리구제(예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추심이체출금취소 등 부당이득반환)를 위한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병합)

- 모집기간 2023년 1월 31일까지 (200명 미만 시 모집기간 연장)
- 대상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하여 예금·대출사고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고피해자

※ 모집제한: 아래 가.부터 차.까지에 해당될 경우 청구·신청인 자격이 없습니다.

- 가. 해당 금융사고에 대해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의 경우
- 나. 확정판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피해금에 대해 이미 환급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 다. 금융회사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산피해 또는 채무피해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라. 사고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 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금융관련업법 및 제16호의 금융관련법규와 관련된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닌 경우
- 사.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불법 금원인 경우
- 아. 본인명의, 대포폰,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법상 각종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방치했던 경우 (※접근매체: 전자식 카드 및 계좌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ID 및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각종 비밀번호)
- 자. 위 사. 또는 아.의 혐의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재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
- 차.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나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밖에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조정 효력), 제40조(시효의 중단), 제41조(소송과의 관계), 제42조(소액분쟁사건 특례)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나 추가적인 신용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도 청구신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별첨1·2 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구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청구·신청 방법·절차
 - ① 아래 #별첨3의 <작성양식(예시) 및 작성안내>를 다운로드 받아 서면을 작성합니다.
 - ② 작성이 완료된 서면의 내용을 온라인 설문폼(<https://moaform.com/q/smHdAb>) 입력 및 한글파일 이메일(finance2@ccej.or.kr) 제출로서 접수받아 위의 청구·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 ③ 이상이 없으면, 청구·신청인 대표의 날인 및 개별 접수번호를 부여한 전자문서(PDF)로 다시 이메일을 통해 회신합니다.
 - ④ 200명 이상 청구·신청서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위임사무 #별첨1의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 766-5623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하거나 현장발언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 모집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설문폼(<https://moaform.com/q/smHdAb0>) 및 아래 #별첨 1~4.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별첨1.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 #별첨2. 청구·신청 Q&A
- #별첨3. 분쟁조정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
- #별첨4. 모집공고

2022년 12월 29일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구·신청인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 참조조문 등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8호](#) “오류” 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2)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당사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104>).
- 3) 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의 하나입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642>).
-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3호 금융거래실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2008. 8. 22. 전부개정 및 [2014. 3. 17. 시행](#); [경찰청 2014. 12. 30. 신설](#) 및 [2015. 7. 시행](#); [외교부 2018. 12. 24. 신설](#) 및 [2020. 12. 21. 시행](#); [금융위원회 등 정부합동 2015. 5. 18. 공고](#), [2015. 12. 22. 고시](#), [2016. 5. 26. 공고](#), [2016. 10. 14. 시행](#), [2017. 1. 17. 시행](#), [2018. 12. 18. 종합대책](#), [2020. 1. 1. 고시](#), [2020. 6. 24. 종합대책](#), [2020. 7. 27. 공고](#), [2020. 12. 10. 공고](#), [2021. 2. 3. 종합대책](#), [2022. 9. 29. 종합대책](#) 등).
- 5)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제1항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제1호에 따라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금융실명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동조 제2항의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친 뒤에 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를 제공받아 본인확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6)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 으로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의 경우 명의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 또는 제출된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사전에 동의를 받아 연계정보([「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를 처리할 수 있다.
- 7)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1호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2호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 보험·공제 금융상품(시행령 제2조의3 제4항 제1호)’ 이나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동조 제4항 제2호)’ 을 해지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1호), ▲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2호), ▲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3호)’ 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8)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전자금융거래, 오픈뱅킹 실명확인 연계정보처리 등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내지 ▲제2호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위 6)의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전제로 한 ▲제3호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신규거래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타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오픈뱅킹 등의 금융공동망을 통해 연계정보를 받아 본인확인조치를 하여 신규거래(특히, 비대면 신규 대출계약)를 체결한 경우에는 미등록 이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전에 등록하거나 연계정보처리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 업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 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이용자가 접근매체([법 제2조](#) 제10호 가목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목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단, [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제2호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호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가목의 ‘누설·노출 또는 방지한 행위’ 또는 나목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3항에 따라 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서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개인을 상대로 책임부담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동조 제2항 제1호) 또는 ▲소기업을 제외한 중대기업 법인을 상대로 사고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하여 준수하고 대리권의 확인(「[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제5조) 등에 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동조 제2항 제2호)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개인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본인 및 대리권의 확인에 관하여 일반인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5259844 판결 등 참조).

- 10)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제2호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 제10조](#)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시행령 제9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등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화·전자우편·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금융회사등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화·전자우편·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12) [특별법 제5조](#) 제1항 금융회사는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특별법 제4조](#) 제1항의 ▲제1호 피해구제 신청([특별법 제3조](#) 제1항) 또는 지급정지 요청(동조 제2항)이 있는 경우,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특별법 제2조](#) [의5](#) 제2항)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특별법 제4조의2](#) △제1항 누구든지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제1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제2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제3호 국제징수법에 따른 채납절차의 개시, ▲제4호 질권(質權)의 설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 14) [특별법 제3조](#) △제1항 피해자는 피해를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15)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 [특별법 제2조의5](#) 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항 금융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6) [민법 제744조](#)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금융기관등]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금융기관등]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때” 에는 지급자(피해자)가 비채변제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